

발간등록번호

11-1140100-000006-10

국민의 마음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

202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CONTENTS

제1장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5

제1절 부패영향평가 개요	6
제2절 부패영향평가 기준	8
제3절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11
제4절 '20년도 부패영향평가 현황	15

제2장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19

제1절 평가기준별 사례	20
1. 준수	20
1) 제재규정의 적정성	20
2) 특혜발생 가능성	27
2. 집행	31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31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61
3. 행정절차	73
1) 접근의 용이성	73
2) 공개성	82
3) 예측 가능성	97
4. 부패통제	131
1) 이해충돌 가능성	131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171

부록 177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178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187
3. 관련 법령	199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199
2) 제·개정 시 참고할 만한 일반법	202

제1장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 제1절 부패영향평가 개요
- 제2절 부패영향평가 기준
- 제3절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 제4절 '20년도 부패영향평가 현황

제1절 부패영향평가 개요



1. 의의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개선하는 사전적·예방적 부패통제 시스템으로 크게 제·개정 법령 평가와 현행법령 평가로 나눌 수 있음



2. 법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내부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2조

-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지침 수립·통보,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개선권고, 평가결과의 통보 등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별 부패영향평가 절차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제6항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 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청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목적

-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 법제도상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부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 법령 등의 입안·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예측 가능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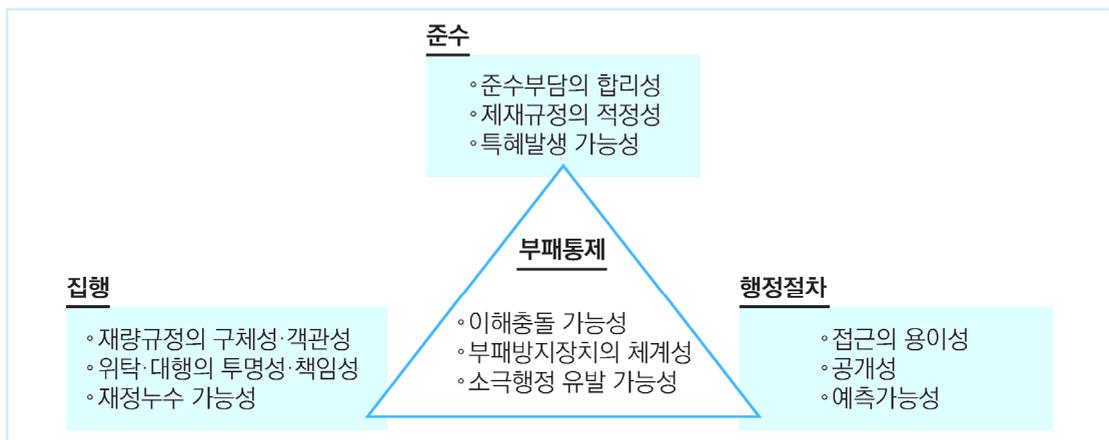


4. 필요성

- 개별 사안별로 사후 적발·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로는 구조적 취약 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부패 예방적 성격의 통제장치 필요
 - ▶ 2005. 12. 29.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하여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6. 4. 1. 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으며,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2007. 12. 28.부터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운영

제2절 부패영향평가 기준(영 제30조제1항)

- 평가 기준은 크게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가지 영역으로 분류
 - ‘준수’는 행정의 수요자(민원인 등) 입장에서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및 ‘특혜발생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집행’은 해당규정이 행정의 공급자(처분권자 등) 입장에서 부패유발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누수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행정절차’는 해당규정이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해 부패발생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예측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부패통제’는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등 행정절차 전반에 걸쳐 사적인 이해관계 개입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부패통제장치 및 부패방지 법령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하며,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 침해,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충돌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1. 준수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집행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 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3. 행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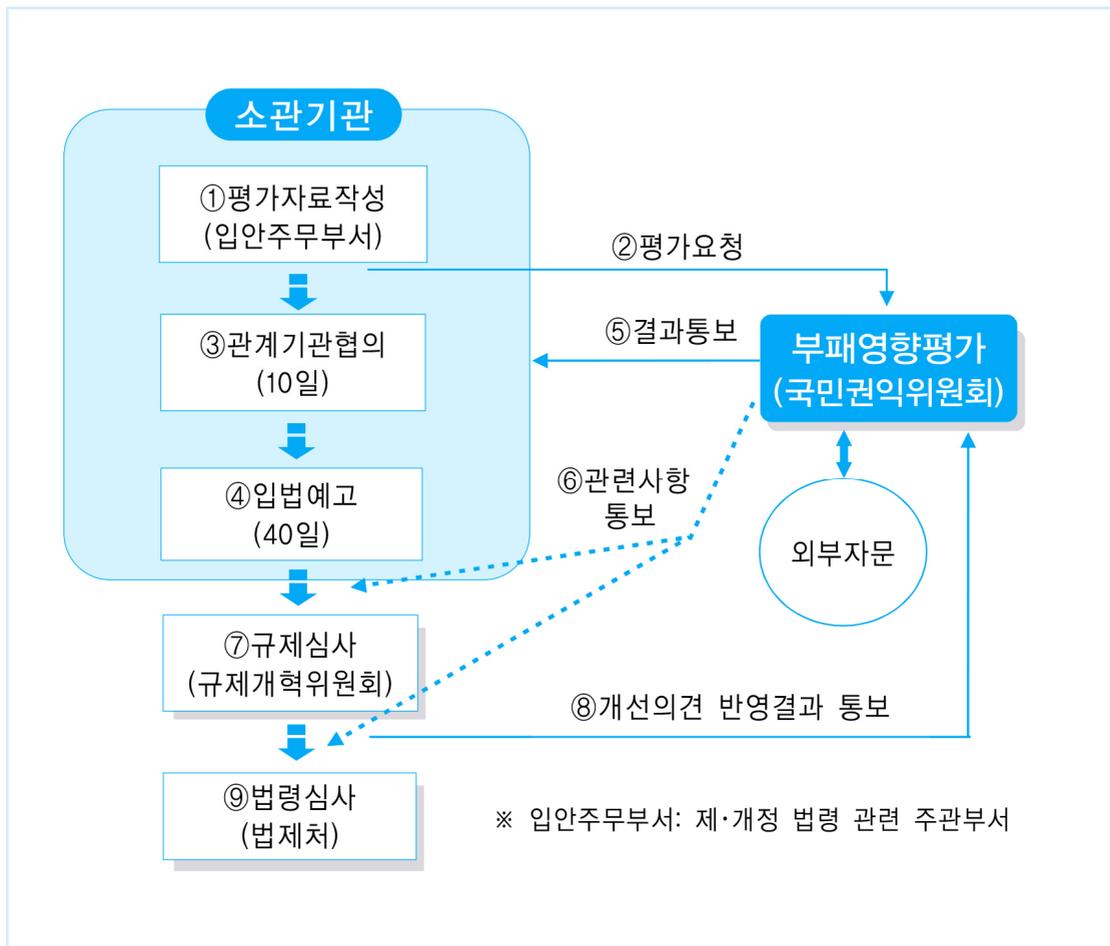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 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처리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4. 부패통제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 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 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제3절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 각 기관은 소관법령의 제·개정시 평가에 필요한 제·개정안 및 기초자료를 첨부하여 관계기관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 위원회는 통상적인 입법예고기간인 40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1. 부패영향평가 요청

-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법령(안)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첨부 하여 관계 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평가 요청

※ 평가 제외 법령 : 직제, 국호·국기·연호, 상훈·전례·국경일, 급여·수당, 문서·관인·차량관리 관련 법령 ⇒ 평가요청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추후 위원회는 직권으로 평가 실시 가능

- 평가요청시 제출할 자료

구분	제출할 자료	비고
일부개정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안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조문별 개정사유서 • 법령 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요청시 부패영향평가 세부 자료, 공청회 자료, 연구용역 자료 등 추가 제출
제정·전부개정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안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 조문별 제·개정사유서 • 법령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요청시 공청회 자료, 연구용역 자료 등 추가 제출

- 평가자료의 제출방법은 공문의 경우 전자문서를 이용하고, 공청회·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 자료는 담당자 e-mail 등 활용
- 법령입안 주무부서는 부패영향평가 요청시 반드시 법령평가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공문 시행
-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법령(안)이 수정·보완된 경우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



2.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가. 평가기간

- 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단계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40일 이내 평가 실시
 - 입법예고기간 내에 평가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연장 가능 (이 경우 최대한 신속히 평가)
 - ※ 평가기간 연장사유 : 법령(안)의 지연제출, 제출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나. 평가방법

- 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평가 실시
 - 개정법령의 경우에는 개정되는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밖의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함께 평가
- 평가단계에서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 다수부처 관련사항,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패영향평가자문 기구」 또는 「외부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위원회는 평가를 마친 경우 개선사항 등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소관 기관에 통보
 - 평가결과는 원안동의·개선권고·철회의견으로 세분하여 통보
- 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 법제처에 통보



3. 평가결과의 처리

- 행정기관은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의견 반영 여부를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행정기관은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 소관기관과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재평가 요청된 제·개정 법령(안)은 당해 법령(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침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 평가 등에 반영
 -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자율평가체계 구축·운영 등
-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차관·국무회의 시 첨부되며, 위원회는 개선의견 반영여부를 체크 후 필요 시 관련의견 제출

제4절 '20년도 부패영향평가 현황



1. '20년도 부패영향평가

2020년에는 총 1,999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 중 169개의 법령안에서 347건의 개선의견을 도출하여 해당 기관에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는 공공기관 등의 출장비 부정수령 문제가 언론에 지속 보도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360개 공공기관에 사규 개선을 권고하였다.



2.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평가를 요청한 법령안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평가하는 것으로, 2020년에는 총 1,999건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법령안 평가를 요청한 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가 273개로 가장 많았고, 행정안전부 145개, 기획재정부 138개, 환경부 118개 등이다.

[평가법령별 소관부처 현황 ('20. 1. 1.~'20. 12. 31)]

계	국토부	행안부	기재부	환경부	복지부	해수부	농축산부	교육부	국방부	과기부	기타*
1,999개	273	145	138	118	117	116	89	87	76	73	767

*기타: 노동부 등 45개 기관

가. 제·개정 법령안 접수·처리 현황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평가를 요청받은 1,999개의 제·개정 법령안 중 1,531개의 법령안에 대해 원안동의를 통보하고, 169개의 법령안에서 3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도출하여 해당 기관에 개선·보완하도록 권고하였다.

[접수·처리 현황(2020.1.1.~2020.12.31)]

평가법령	평가결과		
	원안동의 법령	개선권고 법령	개선권고 건수
1,999개	1,830개	169개	347건

나. 평가기준별 개선권고 현황

평가분야별로 살펴보면 4개 분야 중 행정절차 분야(133건, 38.3%), 부패통제 분야 (107건, 30.8%)에서 개선권고가 많았고, 12개 평가기준별로는 이해충돌 가능성 (102건, 29.4%), 예측 가능성(89건, 25.6%),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73건, 2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기준별 개선권고 현황]

평가분야	평가기준	개선권고 건수
준수 (20건)	준수부담의 합리성	-
	제재규정의 적정성	18
	특혜발생 가능성	2
집행 (87건)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73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14
	재정누수 가능성	-
행정절차 (133건)	접근성의 용이성	21
	공개성	23
	예측 가능성	89
부패통제 (107건)	이해충돌 가능성	10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5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
합 계		347

다. 분야별 개선권고 현황

평가법령 분야별로는 산업개발 관련 법령(663개, 33.2%), 일반행정 관련 법령(324개, 16.2%), 환경보건 관련 법령(322개, 16.1%) 등이 많았고, 개선을 권고한 법령도 산업 개발 관련 법령(53개, 31.4%), 일반행정 관련 법령(34개, 20.1%), 환경보건 관련 법령(24개, 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법령 분야별 개선권고 현황 ('20. 1. 1.~'20. 12. 31.)]

법령	분야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형사 사법	기타
평가법령(개)		1,999	324	177	127	208	663	63	322	114	1
개선권고 법령(개)		169	34	17	14	11	53	4	24	12	-
개선권고(건)		347	64	28	37	21	99	9	56	33	-

제2장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1. 준수
2. 집행
3. 행정절차
4. 부패통제



1. 준수

1) 제재규정의 적정성

개요

- 평가 대상인 법령, 자치법규 등이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벌칙, 과태료 등)가 적절한 수준인지 판단
- 제재수준이 미약할 경우 실효성이 없고, 제재수준이 과도할 경우 부패행위를 통해 제재 회피 시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제재 수준의 적정화가 필요

평가내용

- 제재규정 검토
 - 제·개정되는 부분 또는 평가대상 법령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거규정(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관련규정·내용을 검토
- 제재규정의 필요성 검토
 - 제재규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발생원인 및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피해규모 및 문제의 심각성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다른 법령의 유사 사례와 비교·검토
 - 다른 법령에서 당해 위반행위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제재내용 및 정도, 근거규정 조사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평가대상 법령의 제재수준이 어떠한지 검토

- 제재수준의 적정성 검토
 -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경중·횟수·정도 검토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유형·정도 검토
 - 제재수준이 위반행위를 통제하는 데 적정한지 검토

사례 1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생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1호	120만원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2호	1회 위반	2회 위반
		60만원	120만원

평가기준

- 제재기준 적정성

현 황

- 제정안은 제14조2항에 따른 대통령령에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문제점

-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할 때 가중이 적용되는 기간 계산에서 만료시점을 설정할 때에 위반행위일로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이 장기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중처분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 발생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개선권고 :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39호, 2021. 2. 9., 제정]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생략)

사례 2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유

다른 산업과의 연계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파생 콘텐츠 창출이 용이한 문화 산업인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이에 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

평가대상 조문

제6조(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연간 단위의 평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신청 시 제출한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접근의 용이성

현황

- 제정안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를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함에도 임의적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제재규정의 실효성 약화 및 지정취소 회피를 위한 부패행위 발생이 우려됨
-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 지정취소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에 대해 행정청이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으로서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절차에 대한 접근성 보장 측면에서 타당함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제정안 제6조제4항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를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
- 전문인력 양성기관 취소 시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을 위해 청문 규정 마련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상위 법률 개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16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특혜발생 가능성

개요

- 법령 등으로 인해 특정인 또는 단체에게 특혜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특혜를 획득·유지·확대하는 과정에서 뇌물제공 등 부패행위가 발생되거나 용인될 위험성이 있는지 평가

평가내용

- 수익적 규정 검토
 - 법령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혜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 및 그에 근거한 처분내용을 검토
 - 구체적인 수익내용이 하위법규에 위임된 경우 하위법규의 관련조항 검토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특정계층 등에 대한 수익 발생 가능성
 -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 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는지 검토
-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유사 사례와의 적정성·형평성 검토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
-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 통제장치 마련 여부 검토
 -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사례 1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2조(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②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술지원사업을 위탁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가 위탁받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1.~2. (현행과 같음)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우수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예측 가능성

현 황

-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우수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등의 경우 전문기관(교육부장관 으로부터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사업비의 항목별 계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 별도의 항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기준 불분명
 - 개정안은 우수학자의 기준 및 사업비 금액 기준이 불분명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기준 적용으로 인해 특정인 또는 특정 사업에 대한 특혜 발생 및 예측 가능성 침해가 우려됨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우수학자의 기준을 구체화 하거나 고시토록 규정
- 별도의 계상기준을 적용하는 사업비 금액을 고시토록 규정

[법령안 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 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개정안	개선 의견
<p>제2조(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p> <p>②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가 위탁받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1. ~2. (현행과 같음)</p> <p>3. <u>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우수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u></p> <p>4. <u>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u></p>	<p>제2조(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p> <p>②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가 위탁받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1. ~2. (개정안과 같음)</p> <p>3. <u>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u></p> <p>4. <u>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u></p>

[유사 입법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78호, 시행 2020. 5. 27.]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가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工事)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판매(再販賣)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704호, 시행 2020. 5. 27.]

제10조의3(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 1명 이상이 상시근무할 것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재 관련 분야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문화재교육 경력을 갖춘 사람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재 관련 분야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문화재교육 경력을 갖춘 사람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재 관련 분야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이라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2. 집행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개요

- 행정의 전문화·다양화에 따라 행정청에 대한 재량권 부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추상적·다의적 법령은 집행과정에서 재량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남용되는 등 부패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재량권자,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재량범위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

평가방법

- 재량권자의 명확성 검토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판단의 기준·재량행사 절차의 구체성 검토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가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법령 등의 적용 대상 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지 검토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이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위임인지 검토

■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 재량으로 선택 가능한 행위나, 효과의 종류(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인·허가 여부, 취소·정지 여부 등), 기간의 장·단(취소·정지 기간 등), 금액의 상한·하한(과태료·과징금의 가중·경감) 등이 적정한지 검토
-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 검토

- 불명확한 재량규정으로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 검토 결과 재량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수범자가 재량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지,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는지 검토

■ 과도한 재량권행사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검토

- 재량권 행사과정에 당사자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사전통지절차, 의견청취 절차 등)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정보(회의록, 공문 등)가 공개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권 행사 기준이 설정·공표 되어있는지 검토

사례 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0조의2(자료제출) ① ~ ② (생략)

③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4호의 제출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제출기한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광고판매대행자 및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규정이 신설됨(법 제15조제3항)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문제점

-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자의적 해석 가능성
 - “부득이한 사유”는 해석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판매대행자, 사업자 또는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

- 어떠한 사유에 해당할 때 판매대행자 또는 방송통신사업자는 자료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범위 내에서 그 제출기한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지 불명확하고,
- 과태료 부과를 위해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을 판매대행자나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 또한 큼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부득이한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
 - “천재 기타 사변”,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개선
 -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서 규정토록 위임하는 방향으로 개선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77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0조의2(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① ~ ② (생략)

③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5호의 제출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사례 2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별표 2의3]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거나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 정지 처분의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별표 2의4]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9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거나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 정지 처분의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의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 및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문제점

-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 세부기준과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에서 감경에 대한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행정처분 과정에 부패 유발 우려
 - 시행령 제12조의9제1항(별표 2의3), 제12조의9제2항(별표 2의4)에 의거 위반행위에 고의성의 없거나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 정지 처분의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감경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열거규정이 없어 감경 여부 결정에 행정청(공무원)의 과도한 재량이 개입될 수 있어 감경을 받기 위한 로비 등 부패행위가 발생될 가능성
 - 위반행위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위반행위가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예측 곤란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일반기준에 따른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일반기준에 따른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1. 3. 25.] [대통령령 제31553호, 2021. 3. 23., 타법개정]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9 관련)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 (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10 관련)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 (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기간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 정지 처분의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32조(토지·건물 등의 임대)

① (생략)

②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7.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한다고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③ (생략)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개정안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897호, 2020.1.29. 공포, 7.30 시행)됨에 따라 국공유지 사용허가 및 임대료 감면 등 특례규정 적용대상인 연구기관의 종류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국공유지 사용허가 특례, 임대료 감면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까지 확대하여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이에 따른 연관기업의 유치를 촉진

문제점

- 특례규정 적용대상인 연구기관의 종류 불명확
 - 개정안(제32조제2항)은 법률(제46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국공유지 사용허가 특례*, 대부분 감면, 수의계약 등 적용대상인 연구기관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 *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공유지 사용허가 기간은 5년(행정재산) 또는 10년(일반재산) 이내이나, 새만금 사업지역 입주기업·연구기관 등은 50년 범위에서 사용허가 가능
 - 특례규정 등 적용대상인 연구기관의 종류를 모호하게 규정(‘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기준과 판단에 따라 연구기관이 선정될 우려가 있는 등 행정업무의 투명성 미흡
 - * 특례규정 등 적용대상인 입주기업 종류(업종)에 대해서는 시행령(제32조제1항)에 규정하고, 그 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용대상으로 선정해야 할 입주기업 종류(업종)는 고시(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하도록 위임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특례규정 적용대상인 연구기관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
 - * 개정안에서 연구기관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면, 하위법령(고시 등)을 통해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하는 근거 마련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1. 4. 20.] [대통령령 제31634호, 2021. 4. 20., 타법개정]

제32조(토지·건물 등의 임대) ①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업과 연구기관을 말한다.

1. 기업 :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으로 한다)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 나.(생략)

다. 그 밖에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2. 연구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②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사업지역”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사례 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6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기준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음대책지역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1. ~ 4. 생략

② 자동소음측정망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다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은 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소음측정망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

시설물 설치제한(제4조 관련)

표 생략

1.~5. 생략

6. 위 표에서 방음시설 시공을 위한 “방음시설 설치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제정안은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기준 및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 수립 시 포함 내용 및 그 계획의 고시 및 열람방법 명시(제6조, 제7조)
- 또한, 법률 제6조에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바, 그 제한 시설물의 종류와 제한 조건을 시행규칙에서 구체화(제4조, 별표1, 별표2)

문제점

- 자동소음측정망 및 방음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우려
 -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 및 방음시설 설치 범위가 가변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며,
 -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자동소음측정망 및 방음시설 설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로비 시도 등 부패발생 위험성이 높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자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자동소음측정망 및 방음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이나 기준을 고시하는 등 구체화

개선결과

-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 [국방부령 제1035호, 2020. 11. 24., 제정]

제5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제한조건은 별표 2와 같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제5조 관련)

대상 시설	구분	소음대책지역		
		제1종	제2종	제3종
주거용 시설	방음시설 설치조건으로 신축 허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교육 및 의료시설	방음시설 설치조건으로 신축 허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공공시설	방음시설 설치조건으로 신축 허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비고]

1. 위 표에서 “주거용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나. 다음의 건축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나)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은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양잠·양봉·양어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교육 및 의료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의료시설 및 교육연구 시설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공공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방음시설은 창의 경우 복층창 16mm+복층창 16mm, 출입문의 경우 강철제 문 60mm와 같은 수준 이상의 소리 차단 성능을 갖춘 것을 의미하며, 창은 외부 공기에 직접 접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사례 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60조의7(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전문기관)

- ① 법 제64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감정원
 3. 한국국토정보공사
 4. 지방공사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② (생략)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법 제64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 (중략)

- 법 제64조의6제4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 (지정가능 기관)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지방공사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문제점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지정에 대한 지정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기관 지정 여부가 담당자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
 - 인력에 필요한 인원수, 기술의 구체적 자격 요건, 시설에 필요한 규모 등 최소한의 판단 기준 부재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전문기관 지정요건 구체화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59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64조의6제3항 전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시장동향, 수익률 등의 가격정보 및 관련 통계 등의 조사 자료
5.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의 실제 거래가격
7. 지방세, 수도·전기 요금의 납부에 관한 자료

② 법 제64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국토정보공사
 3. 한국부동산원
 4. 한국어촌여항공단
 5. 지방공사 중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인력·기술 및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4조의6제4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기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사례 6 환자안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나. (생략)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 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의무보고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무보고를 방해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다.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제1호	30	60	100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제2호	30	60	100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개정안은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증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되어 세부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문제점

- 과태료 가중에 대한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 및 판단 우려
 - 시행령 제11조(별표)에 의거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1/2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가 가능하나, 가중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및 열거규정이 없어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라 가중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등 과도한 재량에 따른 부패발생 요인이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과태료 일반기준에 따른 가중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환자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1. 1. 30.] [대통령령 제31414호, 2021. 1. 26., 일부개정]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나. (생략)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환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환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생략)

사례 7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별표1의6]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제10조의19 관련)

1. 일반기준

가. ~ 나. (생략)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하거나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행정 처분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법 제10조의11 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의15 제2항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법 제10조의11 제2항)
 - 평가대상조문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등록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마련

* (시설기준) ① 저장탱크, ② 차량에 고정된 탱크, ③ 천연가스공급선 중 어느 하나를 갖출 것
(자본금 기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문제점

-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과 면제기준이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 부여
 -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이 개입될 수 있어 위반자의 로비 등 부패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 행정처분의 면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처분을 면제받기 위한 위반자의 부정청탁 등 부패 행위 발생 여지가 더 많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행정처분의 감경 및 면제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선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6]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10조의19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처분을 면제하거나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위반사항이 단기간 내에 시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생략)

사례 8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던 과태료 상한액이 세분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 법률에 맞게 정비

문제점

- 과태료 가중 기준의 구체성 미흡
 - 과태료 감경 기준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가중 기준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과태료 가중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위험성이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과태료 가중 기준을 감경 기준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96호, 2021. 4. 6., 일부개정]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교정업무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여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교정업무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려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 9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2조의5(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개정안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의료급여법 제5조(보장기관)]

제5조(보장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업무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제점

- 지원사업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과도한 재량권 남용소지
 -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의료 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 재정누수 가능성이 있고, 행정청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재량권 남용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수요자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
 - 지원사업의 범위를 고시 등을 통해 규정하도록 근거 마련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보건복지부령 제775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8조(의료급여의 범위 등)

- ① 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범위(이하 “의료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급여(약제를 제외한다) :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의료급여(약제로 한정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어 고시된 것
 3.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 ②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은 의료급여대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사례 10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별표4의2]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행정제재 기준(제68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다.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적발된 행위의 고의·과실, 위반의 중대성 및 민원 피해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참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재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개관성

현황

-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에 대한 표준업무 처리절차 및 행정제재 기준 등을 마련

문제점

- 지나치게 광범위한 행정제재 감경·가중 기준
 - 개정안은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의 감경·가중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행정청의 임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감경·가중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011호, 2021. 6. 14., 일부개정]

[별표4의2]

대행기관 행정처분 기준(제68조의5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제2호각 목에 따른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 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이나 그 정도가 중대하여 대행을 의뢰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이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대행을 의뢰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 1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30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요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소특화단지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사업자가 상호연계하여 산업발전을 제고하는 집적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일 것
2. 교통·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에 관한 사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수소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수소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42호, 2020. 2. 4. 공포, 2021. 2. 5, 2022. 2. 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6942호, 2020. 2. 4., 제정, 2021. 2. 5.시행)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수소용품 및 수소사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제점

- 수소특화단지 지정요건이 불분명하여 행정청이 재량권남용 우려
 - 개정안 제30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을 수소특화단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 지정요건 중 모호한 요건*으로 인해 특화단지 지정에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지정업무의 투명성 결여
-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 특화단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수소특화단지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 세부적인 지정요건을 고시 등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규정 마련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5.] [대통령령 제31433호, 2021. 2. 5., 제정]

제28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법 제22조에 따른 수소특화단지(이하 “수소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소산업 관련 사업자 간에 상호연계하여 산업 발전을 향상시키는 집적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일 것
2. 교통·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에 관한 사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수소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수소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수소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개요

- 행정권한·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대행하는 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가 있는지 평가

※ '위탁·대행'외 '행정업무의 부여를 위한 지정'의 경우도 포함하여 평가

지정 규정 중에는 행정업무의 일부를 위임이나 위탁이 아니라 일정한 기관을 지정한 후 그 지정 기관이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지정은 행정청의 업무를 민간기관이 수행하게 되므로 민간 위탁이나 대행과 유사하여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평가기준으로 평가 필요

- 수탁·대행기관의 선정절차·운영방식이 투명한지, 관리·감독 수단이 합리적인지, 책임성확보를 위한 통제 수단이 있는지 등 평가

평가방법

- 위탁·대행의 법적근거, 요건 등 검토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근거, 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의 요건 및 사무를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 위탁사무의 내용이 위탁의 대상으로 적절한지 검토
 - 수탁기관이 재위탁 할 경우 원 위탁기관의 승인절차나 재위탁 사실 공개 등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의 절차적 투명성 등 검토
 - 위탁·대행의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기관의 선정 방식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아 특정업체의 장기간 독점 위험성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대상기관, 선정기준 등을 규정을 공개하고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검토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수탁·대행 기관에 대한 평가규정 등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수탁·대행 기관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행정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검토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의 제재수단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업무의 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지 검토

수탁·대행기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일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서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없음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 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사례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1조의3(숲길 타당성 평가의 위탁)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3.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기술용역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종합업 또는 산림휴양 전문업 산림기술용역업자
4.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5. 「민법」에 따라 등산·트레킹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평가기준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현황

- 개정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숲길 타당성 평가의 기준 및 위탁기관에 대해 규정
 - 숲길관리청은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노선선정·조성계획의 적절성,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타당성을 평가(법 제23조)
 - 효율적인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타당성 평가를 위탁할 수 있음(법 제23조)

문제점

- 숲길의 타당성 평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부재
- 위탁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없어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에 대한 통제수단 결여로 직무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미흡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수탁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마련으로 직무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산림휴양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3호, 2021. 6. 22., 타법개정]

제11조의4(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의 위탁) ①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기술용역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종합업 또는 산림휴양 전문업 산림기술용역업자
5. 「민법」에 따라 숲길 조성 및 숲길 이용자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숲길관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에 관한 타당성 평가 업무를 위탁한 법인·단체에 그 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법률>

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 ① 소방청장등은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구급지도의사의 배치기준, 업무, 선임방법 등 구급지도의사의 선임·위촉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개정안>

제27조의2(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1명 이상의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 또는 위촉하거나, 시·도 또는 국가단위로 전문 의료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부분)

평가기준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현황

- 개정안은 119구급대원의 교육·훈련과 지도·평가 등 구급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선임하고 있는 구급지도의사의 선임방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 구급지도의사에 대한 선임 또는 위촉을 시·도 또는 국가단위로 전문 의료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 119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7조의2(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③ 구급지도의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2. 접수된 구급신고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
3.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의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4.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등에 대한 평가
5. 응급처치 방법·절차의 개발
6. 재난 등으로 인한 현장출동 요청 시 현장 지원
7. 그 밖에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평가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청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

- 간접의료지도 의사의 기관별(소방서, 소방본부) 선임에 따른 부실운영(셀프평가, 졸속평가)을 해소하고,

- 의사 개인이 아닌 의료분야 전문 기관·단체도 간접의료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구급지도의사의 책임성 및 구급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임

※ 직접의료지도는 지도의사가 응급구조사나 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환자에 대한 처치를 수행 또는 유무선으로 지도하는 것이며, 간접의료지도는 보다 포괄적이어서 직접의료지도가 아닌 모든 의료지도를 포함

문제점

- 구급지도의사 선임·위촉에 관한 권한을 시·도 또는 국가단위로 전문의료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규정 부재
 - 상위 법률에서 구급지도의사 선임·위촉은 소방청장등이 하도록 되어있으며,
 - 구급지도의사 선임·위촉을 시·도 또는 국가단위로 전문의료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음 (법 제25조의2)
 - 법률에 규정된 소방청장등의 구급지도의사 선임·위촉 권한을 시행령에서 시·도 또는 국가단위로 전문의료기관·단체에서 선임·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은,
 -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서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기준에 위배

- 전문의료기관·단체 등에 대한 위탁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 부재
 - 구급지도의사 선임·위촉 권한을 시·도, 국가단위로 전문의료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 하위 법령에서 시·도 또는 국가단위로 전문의료기관·단체에 대한 위탁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 규정 마련 필요

검토결과 : 개선권고

〈법률에 근거 규정 마련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 구급지도의사 선임·위촉에 관한 권한을 시·도 또는 국가단위로 전문의료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규정 마련
- 전문의료기관·단체 등에 대한 위탁기준,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법률에 마련
 - ※ 대통령령의 개정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구급지도의사의 업무를 전문의료기관·단체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위탁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사항을 규정할 필요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전문의료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는 내용을 삭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119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70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7조의2(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1명 이상의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의사로 구성된 의료 전문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 단위로 각 기관별 구급지도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② 구급지도의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구급지도의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2. 접수된 구급신고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
 3.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의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4.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등에 대한 평가
 5. 응급처치 방법·절차의 개발
 6. 재난 등으로 인한 현장출동 요청 시 현장 지원
 7. 그 밖에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평가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청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
- ④ 소방청장등은 구급지도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급지도의사를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구급지도의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급지도의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⑤ ~ ⑦ (생략)

사례 3 수의사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11조의2(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에 관한 사항
2.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수의사의 처방, 동물용의약품 사용 등의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인인증을 통한 개인별 접속 및 보안을 위한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수의업무 관련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전문 기관·단체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보안 및 전자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등을 포함한 운영규정과 운영인력에 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평가기준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법률규정에 따라(법 제12조의3)
- 개정령안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안 제11조의2)

문제점

-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위탁운영 시 수탁자 선정방법, 선정절차 등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부재
 -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수탁자 선정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 사업 담당자의 자의적 기준과 재량에 의해 수탁기관이 정해질 우려가 있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하였을 때’ 등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하였을 때’ 등 수탁자의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 미흡 우려

- 위탁계약 기간 및 갱신 한도 규정 부재
 - 위탁계약 기간 및 갱신 한도에 대한 사항이 부재하여, 특정업체의 장기간 계약기간 유지를 위한 불법 로비 등 부패발생 우려

- 위탁계약 체결 또는 취소·변경하는 경우 정보공개 규정 부재
 - 위탁운영계약을 체결 또는 취소·변경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운영 개시 또는 취소 일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이 부재하여
 - 위탁업무 수행자에 대한 국민의 정보접근성 제한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장치 미흡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부재로 수탁자가 위탁업무 부실수행 시 적절한 통제 수단 결여
 - 위탁계약 이후 주기적인 점검 및 점검 결과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등 관리·감독 규정의 구체화 필요

참고 부적절한 행정사무 민간위탁 및 관리감독 부실 사례

- ❖ 퇴직자 동우회 등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감독관청과 수탁기관의 유착 가능성이 우려되는 위탁
 - (비축물자 보관관리) 조달청은 수의계약으로 비축물자 보관관리사업을 (사)조우회에 위탁하여 위탁기관 선정의 적절성 논란
 - * (사)조우회는 조달청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 계약기간 만료 시 편의상 관행적으로 동일 기관에 위탁
 - (생태복원사업) 환경부는 수의계약을 통해 매년 환경보전협회에 생태복원사업을 위탁하여 독점위탁 논란
 -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문화재청은 수의계약을 통해 매년 한국매장문화재협회에 비지정 매장 문화재 학술발굴조사를 위탁

〈'16. 5. 17. 국무조정실 실태점검 결과〉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수탁자 선정방법, 선정절차, 그 밖에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수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하였을 때'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 계약기간 및 갱신 한도 규정 신설
- 위탁계약 체결 또는 취소·변경 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 신설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도록 개선
 - 수탁자에 대한 주기적 점검, 점검결과 개선·보완사항 조치 명령 등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1호, 2021. 9. 8., 일부개정]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1.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2.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처방전의 발급 및 등록
 3.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사항의 입력 관리
 4.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처방·조제·투약 등 관련 현황 및 통계 관리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개인별 접속 및 보안을 위한 시스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행정절차

1) 접근의 용이성

개요

- 정책결정 및 이의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참여제도 내지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지 평가
- 의견진술 제도 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행정절차에 참여·접근이 가능한지, 이해 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 판단(하위 법규에 시행을 위한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판단)

평가방법

-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참여제도의 실효성 검토
 - 참여제도에 이해당사자, 일반국민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참여 기회는 충분한지, 참여 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
- 참여제도의 필요성 검토
 - 별도의 참여제도가 없거나 당해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참여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참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 있는지 검토

사례 1

국가재정법

평가대상 조문

제101조(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2. ~ 8. (생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기준

- 접근의 용이성

현황

- 개정안은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강화를 위해 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하 “전문기관”)의 지정 등 관련 규정을 별도의 장(제6장 성과관리)으로 확대·신설

문제점

- 전문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 보장 규정 미비
 - 전문기관 지정 취소는 법률상 부여된 지위를 박탈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행정에 대한 접근성이 미흡함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전문기관 지정취소 관련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 부여 규정 마련

[법령안 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 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개정안	개선 의견
<p>제101조(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p> <p>④ (신 설)</p> <p>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1조(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p> <p>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유사 입법례]

평생교육법

[법률 제16677호, 시행 2020. 6. 4.]

제42조(행정처분)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 5. (생략)

제43조(청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4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의 취소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김치산업 진흥법

[법률 제17270호, 시행 2020. 5. 19.]

제12조(전문인력 양성)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사례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시행령안〉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률〉 (입법예고, 2020. 12. 10. 시행)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평가기준

- 접근의 용이성

현황

- 제정안은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 취소에 대하여 규정

문제점

- 전담기관 지정취소 시 의견진술 기회부여 규정 미흡
 - 제정안은 전담기관 지정취소 시 취소 사실을 해당 기관 등에 알리도록 되어 있을 뿐, 지정 취소 시 청문 등 이해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행정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측면에서 미흡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전담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부여 규정 마련(법령안 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 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법률	개선의견
<p>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신 설)</p>	<p>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p> <p>④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과 같음)</p> <p>⑥ (제5항과 같음)</p>

[유사 입법례]

평생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32호, 시행 2019. 10. 24.]

제28조의2(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②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43호, 시행 2020. 10. 8.]

제14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14호, 시행 2020. 9. 10.]

제1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목선정 기관 지정의 취소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의 해제

사례 3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40조(양육장소 및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법 제5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정된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육 및 매매한 실적이 없는 경우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접근의 용이성

현황

제정이유

양식산업의 체계적 지원·육성 및 관리체계 통합을 위해 기존「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던 양식업 관련 규정을 통합·보완한 「양식산업발전법」 제정(법률 제16568호, 2019.8.27. 공포, 2020.8.28. 시행) → (주요내용)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세부항목을 정하고, 기존에 도입한 면허의 심사·평가 제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문제점

- 시행령 제40조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규정 미비
 -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에 대한 지정취소는 행정청이 부여한 자격, 권한 등을 박탈하여 해당 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반론권 보장을 위해 청문절차 마련 필요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지정취소 시 이해관계자에 대한 청문절차 규정 마련

*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양육장소 및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청문 규정 개선권고 요청 '19.11.)

참고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 청문은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청문의 기회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인가·허가·면허·등록·승인·지정 등의 취소 및 철회, 법인·조합 등의 설립 취소·해산 명령, 철거·폐쇄 명령, 제조·판매 금지, 자격의 박탈 등과 같이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청문 규정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령안 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 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 청문 규정

법률	개선의견
<p>제54조(금지 및 조정 명령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면허, 한정양식업면허, 허가,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교습양식업 승인에 따른 양식방법 또는 양식수산물의 포획·채취방법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행정관청은 양식업의 단속, 양식수산물의 위생관리나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양식수산물의 양륙(揚陸)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p> <p>③ (생략)</p>	<p>제54조(금지 및 조정 명령 등) 현행과 같음</p>

법률	개선의견
<p>제75조(청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변경·취소 2. 제27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3. 제51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4. 제55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p>〈신설〉</p>	<p>제75조(청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변경·취소 2. 제27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3. 제51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4. 제55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5. 제54조제2항5호에 따른 지정의 취소

[유사 입법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00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27조의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업경영정보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2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체의 지정 취소
2. 제27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3.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4.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2) 공개성

개요

- 평가대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 판단
- 민원인 등의 정보공개 신청에 따른 소극적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관련정보를 인터넷게시, 개별통지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주는 적극적 공개도 포함

평가방법

- 정보제공 관련규정 검토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 검토
 -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제공시기·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 정보제공 관련규정 실효성 검토
 -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국민이 공개된 정보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검토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공개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사례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9.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하로 미흡한 경우

평가기준

- 공개성

현황

-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결과*가 미흡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위탁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개선 및 공공성 강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제30조(어린이집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문제점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취소하는 경우 정보공개 규정 부재
 - 위탁운영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계약 취소사유 등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이 부재하여
 - 해당 수탁자의 이용자에 대한 국민의 정보접근성 제한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장치 미흡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의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량권 남용 우려
 -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결과의 기준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이 결여될 가능성 상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하였을 때’에 대한 제재규정 부재
 - 수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하였을 경우는 중대한 위반으로서 당연취소 사유임에도 관련규정이 부재하여 계약유지를 위한 수탁자의 부정청탁 가능성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취소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취소 사유 등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 신설
- 어린이집의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결과의 기준을 수요자로부터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하로 미흡한 경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하로 미흡한 경우”로 개선
- 수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하였을 때’ 강행규정으로 취소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구분하여 재설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 [보건복지부령 제788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 24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30조제1항·제4항·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6.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7.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8.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9.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0.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사례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0조의5(문화재교육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2조의4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단
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유산국민신탁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5. 그 밖에 문화재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에 적합하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문화재청장은 지원센터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내역 및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공개성

현황

- 개정안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구체적인 범위와 유형, 문화재교육 실태 조사의 범위와 방법, 문화재 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문화재교육 관련 업무의 외부위탁에 관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11.26.공포, 2020.5.27.시행)

5G문화재 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재기본계획·문화재교육지원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 등 문화재 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문제점

- 문화재교육 관련 업무 위탁 시 공개규정 부재
 - 개정안(제10조의5)은 법률(제22조의4제4항)의 위임에 따라 문화재교육 관련 업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을 확정하지 않고(‘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 포괄적으로 규정(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하면서,
 - 수탁기관 및 위탁사무의 내용을 국민 및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규정이 없어, 행정업무의 투명성이 다소 미흡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 제3장 보칙규정 6.권한의 위임·위탁〉

대통령령을 제정·개정하는 당시에는 위탁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향후 위탁여부가 변동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위탁여부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이 수탁기관 및 위탁사무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수탁내용 등을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반드시 두도록 한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문화재교육 관련 업무의 수탁기관 및 위탁사무 내용을 고시하는 등 공개규정 마련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6. 10.] [대통령령 제31600호, 2021. 4. 6., 일부개정]

제10조의4(문화재교육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2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단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라 한다)
 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6.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문화재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지원센터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원센터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과 예산집행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사례 3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개정안)

제14조(보건의료 실태조사)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의료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법 제55조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공개성

현 황

- 법률 제55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시행령 14조에는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면 임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선안은 법률 제55조 제3항에서 위임된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보건의료 실태조사)

제55조(보건의료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 실태조사 관련기관 선정 시 자의적 해석 가능성
 - 실태조사 기관 선정 시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인력장비를 필요로 한 연구기관, 법인, 단체 인지가 불명확하여 재량권 남용소지 및 자의적 해석 가능
-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시기 등 부재
 -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 공개범위, 공개시기, 공개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태조사결과 공개의 실효성과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될 가능성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보건의료에 관한 실태조사 기관 선정 시 자격요건에 대한 명확화 또는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안 마련
- 공개범위, 공개시기, 공개기간 등 공개규정 구체적 마련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9. 12.]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제14조(보건의료 실태조사)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 행태
2.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의 현황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최근 3년간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사례 4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9조(학습기업의 지정기준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8. (생략)
- 9.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가기준

- 공개성

현황

- 일학습병행법 적용을 받고 일학습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학습기업으로 지정받아야 함 (법 제13조)
- 법률에서는 학습기업 경영기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와 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
 - * 법률에서는 학습기업 지정을 위한 경영기준과 지정기준을 각각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
- 학습기업 지정신청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일학습병행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을 학습기업으로 지정
 - * 고용노동부장관(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은 학습기업 지정요건, 지정신청 절차 등을 연 1회 이상 공고 → 지정신청은 수시로 가능

문제점

- 학습기업 지정요건의 불명확

- 학습기업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학습기업 지정받기 위한 포괄적인 요건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재량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학습기업 지정요건을 수요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81호, 2020. 8. 27., 제정]

제8조(학습기업의 지정 요건)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이 아닐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된 내용과 관련된 사업장(공표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이 아닐 것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아닐 것
4. 「고용보험법」 제9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일 것
5. 상시근로자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이하 “사업장 외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위탁, 일학습병행 직종, 학습근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수 이상일 것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생성한 기업신용등급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 이상일 것(기업신용등급이 생성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인력의 확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에 대한 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기업현장교사를 1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2.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실무담당자를 1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사례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0조의4(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 지원의 취소·철회·감액·환수 등) ① 법 제14조의2제5항의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2.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기간 중 회사의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당해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경우

② 신청인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철회·감액·환수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평가기준

- 공개성

현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법 제14조의2 제1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 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설·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을 취소·철회 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인이 현금지원을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을 취소·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하여야 함(법 제14조의2제5항)
- 평가대상조문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의 취소·철회·감액·환수 등에 해당하는 사유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함

문제점

- 현금지원의 취소·철회·감액·환수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공개성 미흡
 - 신청인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철회·감액·환수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임에도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공개하지 않아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 및 행정절차의 공개성 저해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현금지원의 취소·철회·감액·환수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고시하여 신청인이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알 수 있도록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11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20조의4(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철회·감액·환수 등) ① 법 제14조의2제5항에서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2.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계약기간 중 투자 대상 법인·기업의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해당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 ② 신청인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철회·감액·환수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후 고시한다.

3) 예측 가능성

개요

- 업무처리의 과정 및 결과를 누구나 충분히 예측가능한지,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판단
- 이해관계자 등이 자격기준 및 필요한 제출서류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하고,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의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하여 불투명한 결과에 대비하기 위한 부패행위를 예방

평가방법

- 행정절차 관련규정의 구체성 검토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 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업무의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행정절차 관련규정 이해의 용이성 검토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용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검토
- 예측 가능성 판단
 - 모호한 기준 중의적·다의적 표현 등으로 행정청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 재량을 행사하거나, 민원인이 처리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지 검토

사례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7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은 그 출연금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무기체계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은 그 출연금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은 국방연구개발사업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한다. 이때 사업비 부담 비율과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 부담금 중 현금·현물 비율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1. ~ 2. 생략

⑦ 생략

평가기준

- 예측 가능성

현황

- 시행령 제정안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2021. 4. 1.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안 제7조 제3항, 제4항, 제6항)

문제점

-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기술료의 산정·징수·감면 및 분할납부, 개발성과물의 확산·기술이전 및 실용화 등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부령으로 위임하거나 고시 등을 통한 예측 가능성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필요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자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기술료의 산정·징수·감면 및 분할납부, 개발성과물의 확산·기술이전 및 실용화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위임하거나 고시하는 방안 마련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57호, 2021. 3. 30., 제정]

제5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전부를 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업
2. 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받는 연구개발기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에 직접 지급
 2.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이하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에 지급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

1. 직접비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드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인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례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30조의5(불법촬영물등의 신고·삭제 요청 등) ① 법 제22조의5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3. 그 밖에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부터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위탁 또는 보조받은 기관·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단체

② ~ ③ 생략

평가기준

- 예측 가능성

현황

-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를 요청하는 기관에 대하여 구체화하는 시행령 마련(안 제30조의5 제1항)
 - ①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③ 그 밖에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부터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위탁 또는 보조받은 기관·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단체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허위영상물 및 청소년성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문제점

-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 요청 등을 하는 기관·단체로서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부터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위탁 또는 보조 받은 기관·단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우려

-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 요청 등을 하는 기관의 범위가 가변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며,
- 만약 고시 등으로 제정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자들은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 요청 등을 하는 기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로비 시도 등 부패발생 위험성이 높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자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 요청 등을 하는 기관·단체로서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부터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위탁 또는 보조받은 기관·단체에 관하여 고시 등으로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26호, 2021. 6. 8, 타법개정]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그 밖에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부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 ②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하 “신고·삭제요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또는 같은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 문서를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 ⑤ (생략)

사례 3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20조(사용료의 징수 등)

⑥ 제5항제3호가목에 따라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용료의 종류는 제4항제1호에서 정한 사용료를 말하며, 제7항에서 정한 면제대상 사용료 이외에 공항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5항제3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예측 가능성

현황

- 개정안은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문제점

- 사용료 감면 요건의 구체성 미흡
 - 개정안은 최소한의 예시 등이 없이 공항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해관계자 등의 예측 가능성 침해가 우려됨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감면 요건에 대해 최소한의 예시를 제시하는 등 예측 가능성 제고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56호, 2021. 6. 11, 일부개정]

제20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 기준은 별표 5와 같고, 같은 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 ② 지방항공청장은 공항운영자에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공항운영자는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금액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료 요금표
 - 가. 사용료 부과 대상시설
 - 나.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
 - 다. 사용료의 징수 방법 및 절차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료 감면 규정
 - 가. 감면대상 사용료의 종류
 - 나. 사용료 감면절차 및 감면비율
4. 변경 사유 및 변경 전의 사업수지계산서(사용료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사례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1조의2(보상금의 환수)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가축 사육하거나 사육제한 명령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사육한 경우

평가기준

- 예측 가능성

현 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 위임 조문〉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보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의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48조(보상금 등) 5항에 따른 보상금 환수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행령(안) 제11조의 2에 보상금 환수 규정 신설

문제점

- 시행령 제11조의2는 가축 사육제한 명령 위반 농가의 보상금의 환수 절차 등을 정하면서,
 - 보상금 환수사유 발생 시 환수절차의 환수 납부방법 및 납부자에게 고지해야 할 세부규정을 누락하여 납부자의 권익과 예측 가능성을 침해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보상금 환수 요건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
 - * 타 다수의 입법례 등 보상금 환수 조항 법률에 근거를 둠
 - 추후 법률개정시 시행령(안 제11조의2)에 규정된 보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11조의2(보상금의 환수 조항 삭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제11조(보상금 등)** ① 법 제4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 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 ⑥ (생략)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환수처분 통지일 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제21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 5. (생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보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한다.

⑦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례 5 병역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47조(공공단체의 범위) ① 생략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관
2. ~ 4. 생략
5.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관

② 생략

평가기준

- 예측 가능성

현황

- 사회복지요원이 복무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비영리기관의 선정권한을 병무청장이 행사하도록 규정(안 제47조 제1항 제1호 제5호)

※ 사회복지요원이 복무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비영리기관의 선정권한을 국방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새로 지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여 그 증감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하여 병무청장에게 선정권한 부여

문제점

- 사회복지요원이 복무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비영리기관 등의 선정에 있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우려
 -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사회복지요원이 복무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비영리기관 등의 선정이 가변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며,

- 만약 고시 등으로 제정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자들은 복무할 기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요원이 복무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비영리기관 등 공공단체에 관하여 고시로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798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47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3. 어업정보통신국
4.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비영리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5.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사례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86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 ① 법 제77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 제77조제2항과 제3항에 의한 조사 종료된 후,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장(전담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동 업무를 담당할 부서의 장, 이하 전담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서식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평가기준

- 예측 가능성

현황

-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6.9 공포)에 적극행정 면책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등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함

※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의2

- 개정안은 공무원 등의 적극재난 관리 여건 조성을 위해 재난관리 면책기준과 운영절차를 마련하려고 함

※ 인사혁신처에서 국무회의에 보고('19.2.12)한 '적극행정 확산방안'에 따라, 적극 재난관리 여건을 마련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제외대상에 대한 조항을 신설(안 제86조의3)>**적극행정 면책 기준 5가지 제시(제1항)**

- ①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행위
- ② 재난안전 업무 적극 처리
- ③ 사적인 이해관계 없을 것
- ④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것
- ⑤ 3호, 4호에 요건을 갖추어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적극행정 면책 대상 제외 기준 5가지 제시(제2항)

- ① 재난 및 안전관리 의무나 지시를 고의로 미이행하는 행위
- ② 금품수수 등 행위
- ③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법령의 본질을 위배
- ④ 위법부당 민원수용 등 특혜
- ⑤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

문제점

- 재난관리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기준과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외에 “면책의 운영절차 등 세부사항”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 상존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재난관리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 세부사항”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개선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765호, 2021. 6. 10, 일부개정]

제86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 ① 면책 대상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책 대상자 또는 그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가 종료된 후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에게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방법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례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 가. 다음 각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정밀심사결과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규정한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의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나.~라. (생략)

평가기준

- 예측 가능성

현 황

-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 (시행령) 개정안은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결과를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보행상 장애’로 규정하려는 것임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지원 종합조사표 및 신청란 등 기준을 고시에 반영예정

문제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기준을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재량권 남용 우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충족하는 사람’으로 규정한 바, 이는 무엇으로 정하는지가 모호하고 불분명하여 예측 가능성이 결여될 가능성 상존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기준을 수요자로부터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충족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충족하는 사람”으로 개선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20.10.27.) (상기법 시행령 제20조의3 1항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1840호, 2021. 6. 29., 일부개정]

제20조의3(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법 제3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2.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포함한다)의 발급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려면 조사의 일시·장소·목적·내용 및 담당자의 인적 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작성하는 업무
 2.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대한 연구·개발 업무
- ④ 국민연금공단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사례 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6조(조달기업의 지원)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온라인 상품물 등록 대상 상품의 지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제29조(우수조달물품 등의 효력정지 및 지정취소)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효력 정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절차·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평가기준

- 예측 가능성

현황

- 개정안은 우수조달물품의 효력정지·지정취소 및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달청장이 단독 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예측 가능성 미흡
 -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 관련 사항, 우수조달물품의 효력 정지·지정취소 관련 사항 등은 행정의 중요사항으로서 이해관계자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개정안은 해당 사항을 고시 등으로 규정하지 않아 행정청의 임의적인 기준·절차 적용 등으로 인해 행정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고 이해 관계자의 예측 가능성이 침해될 수 있음

참고 개정안 내에 평가대상조문 2와 유사한 경우에 대해 고시토록 규정된 사례가 있음

제15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계약의 특례)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 제품의 지정, 공동수급체의 구성, 계약상대자의 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 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아래 사항과 관련된 절차·기준 또는 세부사항을 고시토록 규정

조달기업의 지원(제26조), 우수조달물품 효력정지·지정취소(제29조)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31호, 2021. 8. 6, 타법개정]

제29조(조달기업의 지원) ① 법 제25조에 따라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1. 조달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조달제도 안내 및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2. 창업·벤처기업 등 조달기업의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물 운영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조달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방법
 -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온라인 상품물 등록대상 상품의 지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우수조달물품 등의 효력정지 또는 지정취소)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이하 이 조에서 “우수조달물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우수조달물품등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우수조달물품등의 효력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그 사유, 기간(효력정지의 기간을 말한다)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지정을 받은 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효력정지 또는 지정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효력정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사례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5조의4(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

- ⑥ 구분소유자는 수선적립금을 점유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예측 가능성

현황

- 개정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2021. 2. 5. 시행예정)에 따라 수선적립금의 산출기준, 징수기간과 주기 등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

문제점

- 수선적립금의 반환 상대 미규정
 - 점유자가 수선적립금을 납부한 경우 구분소유자가 반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반환 상대를 조문에 명시하지 않아 공동점유자 문제 등 조문의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수선적립금 반환 상대를 조문에 명시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집합건물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23호, 2021. 2. 2, 일부개정]

제5조의4(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 ① 관리단은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해야 한다.

② 수선적립금은 법 제28조에 따른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법 제12조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징수하고, 관리단이 존속하는 동안 매달 적립한다. 이 경우 분양되지 않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한 수선적립금 부담분은 분양자가 부담한다.

③ 수선적립금의 예치방법에 관하여 규약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에 관리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해야 한다.

④ 구분소유자는 수선적립금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점유자(이하 “점유자”라 한다)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사례 10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10조(운항시각의 회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운항시각을 배분 받은 항공운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다.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하계 또는 동계) 종료 시에 회수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운항시각을 즉각 회수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예측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개정안은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한 운항시각의 회수 사유 및 회수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

문제점

- 불분명한 운항시각 회수사유로 인한 예측 가능성 침해 우려
 - 개정안은 고시 등 구체적인 규정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해관계자 등의 예측 가능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운항시각 즉각 회수에 대해 과도한 재량권 부여
 - 개정안은 구체적인 조건 등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항시각을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인한 부패행위 발생이 우려됨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운항시각 회수사유를 고시 등을 통해 구체화
- 운항시각 즉각 회수에 대해 최소한의 예시를 제시하는 등 구체화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30호, 2021. 3. 16, 전부개정]

제13조(운항시각의 회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그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다.

1. 운항시각을 배분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시각을 배분받은 경우
 - 나. 운항시각을 배분받을 때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다.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이 계속되어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라.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한 경우
 2. 항로 또는 공항의 혼잡도 개선 등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운항시각 회수는 해당 운항기간이 종료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해당 운항시각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항시각의 회수를 통보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운항시각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회수 대상 운항시각
 2. 회수 사유

사례 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별표4]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5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 다.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시정명령으로, 지정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3개월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2) 중소기업 기술진흥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7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7조 제4항제2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평가기준

- 예측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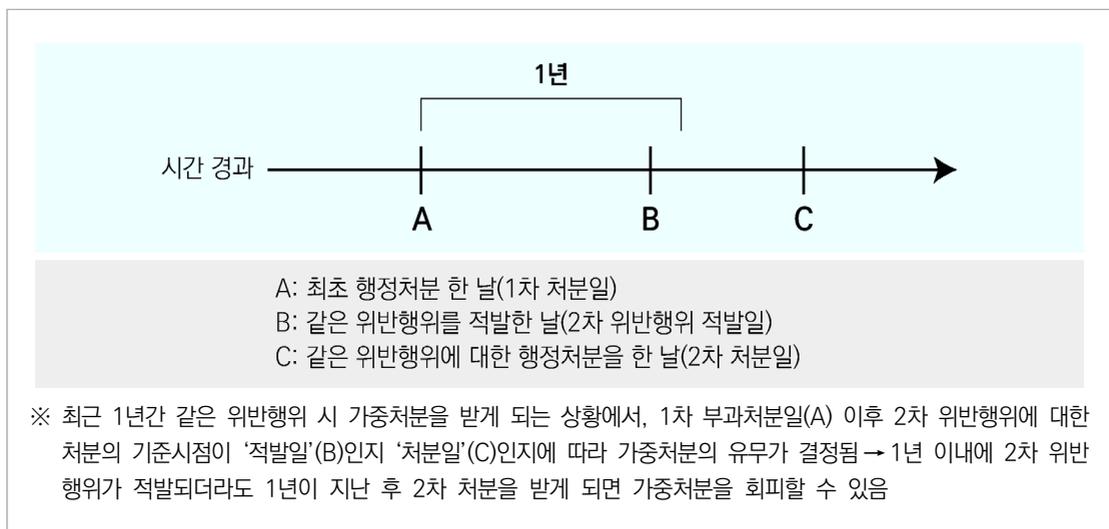
현황

-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6816호, '19. 12. 10. 공포, '20. 6. 11. 시행)
 - 평가대상조문은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

문제점

- 위반횟수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처분기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저해
 -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차등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 횟수 산정기준*이 미흡하여 재차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적용 관련 예측 가능성 저하
 - *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안 별표4.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최초 처분일 이후 1년 내에 재차 적발되더라도 1년이 지나 처분이 이루어지면 2차 위반에 따른 처분이 아닌 1차 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처분일을 늦추기 위한 부정청탁 등의 부패발생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일 구체화
 - 재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일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 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분명한 처분기준으로 인한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60호, 2021. 6. 8., 일부개정]

[별표 1]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나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고,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2) 중소기업 기술진흥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생략)

사례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생략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조합원 모집계획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마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 규약
2. 조합명으로 개설된 금융기관계좌의 잔액증명서(제출일 2일전)
3. 고유번호증 사본
4. 법 제15조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관·관리를 신탁업자에 위탁하였음을 증명 하는 서류(해당시)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 ⑥ 생략

평가기준

- 예측 가능성

현 황

-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조합원 모집계획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결성 계획서를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정안 제6조제2항)
- 제정안 제6조제3항은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마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문제점

- 평가대상조문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등록신청을 위해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 저해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 저해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행정규칙인 고시 형식으로 정하여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2. 24]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1호, 2021. 2. 24, 일부개정]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0.(생략)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조합원 모집계획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마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합 규약 사본
2. 조합원 명부
3. 결성총회 의사록 사본
4.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 증명서류
5. 조합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계좌의 잔액증명서(제출일부터 2일 전에 발행된 것을 말한다)

6. 고유번호증 사본
7.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관·관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신탁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④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조합 규약
 2.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4. 조합원별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5. 조합의 존속기간
 - ⑤ (생략)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례 1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9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전공분야 보수교육
 2. 교수학습기법 등 교직분야 보수교육
- ② 법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훈련 또는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등은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하고, 매 해마다 다시 기산한다)에 2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법 제7조의2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과정에 대한 심사 등에 보수교육 이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④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소속 훈련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⑤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평가기준

- 예측 가능성

현황

- 훈련강사의 능력개발 지원 근거 마련과 동시에 훈련교·강사 보수교육 의무화 관련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20. 3. 31.)
 - * 법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 (시행령) 개정안은 보수교육의 주기·시간, 분야, 보수교육 참여 대상자의 보호, 보수교육 이수 결과의 심사·평가 반영 등 규정 신설
 - 교육강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1년에 2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
 - * 특성화고 교사는 연 30시간 수준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나, 방학이 없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훈련교강사들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24시간으로 규정

문제점

-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등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그 무엇으로 정하는지가 불명확하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이해관계자로부터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상황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등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개선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50호, 2020. 7. 14, 일부개정]

제2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훈련직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
 2. 훈련과정에 대한 교수 기법
 3. 훈련생에 대한 지도 및 상담
 4. 훈련성과 및 훈련생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보수교육의 시간은 24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법 제7조의2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부패통제

1) 이해충돌 가능성

개요

-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 충돌 방지장치가 규정되어 있는지 등 부패유발요인 평가

평가내용

-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
 - 위원 및 임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야기하거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결정이나 심의 등을 하는 경우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결정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유무 검토
 - 자격요건 및 임기·연임 규정, 제척·기피·회피, 해촉, 공무원 의제, 겸직·영리행위 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적정성 검토
 - 자격요건의 구체성, 연임제한 규정의 유무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척규정이 있는지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검토

-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범력 강화수단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 시 뇌물죄 등 형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

사례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2조의3(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이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⑧ (생략)

제12조의5(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사안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사안이 발생한 건설기계 제작자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7. 위원이 속한 법인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8. 최근 2년 이내에 위원이 해당 사안이 발생한 건설기계 제작자 등과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 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 ⑤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관련 심의 등을 중지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 개정안은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220호, 2020.4.7. 공포, 2020.10.8.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계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 해촉, 제척·기피 등 위원회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국토부 고시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던 '건설기계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의 임무, 위원 자격 및 임기 등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문제점

- 의사·의결 정족수 규정이 없어, 위원회 운영과정의 투명성 미흡
 - 개정안(제12조의3)에서는 '건설기계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의 회의주재, 위원장 직무대행, 회의 소집·통지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면서,
 - 위원회 의사·의결 정족수에 대해 규정하지 않아, 위원회 의결 시 다수결의 원칙이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등 운영과정의 투명성 미흡

「법령입안·심사기준」 제5장 실체규정 22. 위원회 3)위원회 운영

위원회 의결에 관한 규정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반영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함께 규정하며,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과반수로 정한다.

- * 개정안(제12조의6)에 따르면 '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할 경우에는 의사·의결 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는 규정
- ** 현행 시행령(제3조의5)에 규정된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 대해서는 의사·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규정

-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제도가 미흡하여, 이해충돌 가능성 우려
 - 개정안(제12조의5)에서는 '건설기계제작결합심사평가위원회'의 기능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 *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등에 결함이 발생한 건설기계에 대한 시정조치, 건설 기계 결함 등 확인 조사결과 등을 심의(법 제20조의6)

-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제척결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안건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고, 제척결정은 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함에도,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여, 위원회의 제척결정이 있어야만 제척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제척제도 운영에 과도한 재량권 보유

* 당사자가 제척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제척신청이 아니라 제척사유를 원인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법령입안·심사기준」 제5장 실체규정 22. 위원회 2)위원회 구성

-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제척 결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안건에 관한 회의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고, 제척 결정은 이를 확인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
- 만일 제척 결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가 결정한다.”와 같이 별도의 제척 신청 또는 결정에 관한 규정을 둔다면 당사자의 제척 신청 또는 제척 여부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제척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 또한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해당안건에서 당연히 회피하여야 함에도, “회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회피제도 운영에 불필요한 재량권 부여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시 의사·의결 정족수 규정화
-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제도 등 이해충돌방지규정 보완
 - 위원회의 제척결정 관련 규정은 삭제하고,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의 회피는 의무화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6. 24.] [대통령령 제30798호, 2020. 6. 23. 일부개정]

제12조의5(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④ (생략)

⑤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조사의 결과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주요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6(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할 경우
 7.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8.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과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최근 2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④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해당 안건의 심의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사례 2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

평가대상 조문

제7조(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1명 밖에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연관된 현행 조문

제6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① 임용권자(선발시험을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험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인사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이중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

- 개정안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복수 추천만 가능하도록 한 기존규정을 응시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도 단수추천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 함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관련 내용]

구 분	내 용
구성 (시행령 제6조)	임용권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구성해야 함 -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

※ 선발심사위원회는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관련 예규에 규정 위원수, 위원장의 권한과 임무,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위원회 운영방법(제척·기피·회피 포함) 등

문제점

-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배제를 위한 법령상 근거마련 필요
 -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은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선발시험(필요 시 필기·실기시험)을 진행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럼에도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법령상에 규정화 하여 선발과정의 공정성 제고 필요

관련보도

❖ 경기도, '남양주 채용비리' 의혹 감사 착수...수사의뢰 여부 주목(NEWS 1 2020.07.01.)

-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을 지낸 이모 변호사는 최근 "조 시장이 자신의 측근인 남양주시 흥모 감사관을 시켜 채용공고도 나오기 전에 내게 감사실장직을 제안했다"면서 채용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 이 변호사는 지난해 5월 남양주도시공사에 신설된 개방형 임기제(2년) 감사실장에 임명됐으며 13개월 뒤인 지난달 4일 직위해제됐다.

❖ 제척·기피·회피 관련 근거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 참고

- 의사·의결 정족수를 법령에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필요
 - 현행 조문은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에 대해 규정하면서, 위원회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대해 규정하지 않아, 위원회 의결 시 다수결의 원칙이 반영되지 않을 우려
 -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의사정족수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와 의결정족수(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규정(제6조 제6항)
 -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행안부 예규)」에서는 각 지자체 자체 운영규정을 통해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함

「법령입안·심사기준」 제5장 실체규정 22. 위원회 3) 위원회 운영

위원회 의결에 관한 규정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반영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의사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함께 규정하며,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과반수로 정한다.

- 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법령상 위임근거 마련 필요
 - 관련 예규에서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각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러한 운영규정을 위임하도록 한 법령상 근거가 없어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부족
 - ※ 관련 예규에 규정된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내용 : 위원수, 위원장의 권한과 임무, 의사정족수, 의결 정족수, 위원회 운영방법 등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에 대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 규정 신설
- 하위 법령에 그 밖의 위원회 운영 등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규정 마련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22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6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① 임용권자(선발시험을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험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인사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④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대상자는 위원에게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公正)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⑤ 제4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선발시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사례 3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 개정안은 '예술 활동 증명 심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위원 수의 상한을 폐지하고, 위원의 연임 규정 및 신규 선임된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령을 정비

문제점

- 연임 제한 규정 부재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 미흡
 - 심의위원회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는 이 법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예술인' 자격 획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 개정안은 위와 같은 심의위원회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특정 위원의 장기적인 연임으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저해될 위험성이 있음
 -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등 규정이 없어 심의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는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 미흡으로 인한 부패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저하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해관계자 등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 마련
-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해촉 규정 마련
-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형식을 구체화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4호, 2021. 3. 24, 일부개정]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단의 상임이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⑤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⑥ 재단의 상임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다.

사례 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2조(중양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0조에 따른 중양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중양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 나.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 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 라.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2. 소음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전문가 중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4명 이내의 사람
- ② ~ ⑧ 생략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 시행령 제정안 제22조, 제23조는 중양소음대책심의위원회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

* 중양소음대책심의위원회 및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법 제20조, 제21조에서 각 규정

【지급심사위원회 심의사항 및 운영 등】

구 분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20조, 제21조)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보상금 재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
구성 (시행령안 제22조, 제23조)	위원장은 국방부차관(법 제20조 제3항), 간사는 국방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업무 담당 과장 -당연직위원 :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위촉위원 : 4명(소음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전문가 중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간사는 시·군·구의 소음 등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임명직위원 :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위촉위원 :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4명 이내의 사람
위원 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 (법 제20조 제2항)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 (시행령안 23조 제1항)
정족수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시행령안 제22조 제4항)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시행령안 제23 제3)

문제점

- 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자격 불명확으로 자의적 구성 가능성
 - 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자격에 대하여 단순히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지명하여 상황에 따라 위원장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로 운영될 가능성 있음

- 부적격 위원의 심의 원천 배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
 - 부적격한 위원의 심의 원천적인 배제를 위한 결격사유가 규정화 되어 있지 않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각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열거
-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 신설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1. 27.] [대통령령 제31173호, 2020. 11. 24., 제정]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나. 소음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라. 그 밖에 소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중앙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중앙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 ⑥ 중앙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중앙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사례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신용평가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 관련 민원처리 분석결과 등에 관한 심의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법 제26조의3제5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으로 한다.
- ③ 검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경영학·경제학·통계학 또는 법학 등을 전공하고 신용평가·개인정보 보호·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신용평가·개인정보 보호·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신용평가·개인정보 보호·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④ 위원장을 제외한 검증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 ⑨ (생략)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해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3)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심의사항〉

■ 법 제26조의3

1.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2.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평가모형의 예측력, 안정성 등에 관한 심의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

1. 개인신용평가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 관련 민원처리 분석결과 등에 관한 심의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심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대한 고지 등의 역할을 수행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3)

문제점

■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 부재

-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위원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자료 등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 위원의 장기 연임에 따른 부패 발생 위험 내포

■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부재

-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없어 심의 안전에 대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음

■ 부적격한 위원의 심의 배제를 위한 해촉 규정 부재

- 특정위원의 업무상 비밀누설, 비위행위 및 회피의무 위반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심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해촉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성·공정성 저해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시행령에 명시
- 위원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 업무상 비밀누설 및 비위행위, 회피의무 위반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해당위원회에 대한 해촉 규정 마련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 2021. 8. 4.]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일부개정]

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①~② (생략)

- ③ 검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경영학·경제학·통계학 또는 법학 등을 전공하고 신용평가·개인정보 보호·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신용평가·개인정보 보호·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신용평가·개인정보 보호·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④ 위원장을 제외한 검증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검증위원회는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심의를 반기별로 1회 실시해야 한다.
- ⑥ 검증위원회는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하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⑧ 검증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⑨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8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검증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또한,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⑩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검증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⑪ 검증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해당 개인 신용평가회사등에 통보해야 한다.
-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결과의 보고·통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사례 6 문화재위원회 규정

평가대상 조문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등의 조사·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5. (생략)
- ② 해당 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등은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결로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1.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4.~11. (생략)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 개정안은 문화재위원회 위원수를 확대(80명 이내 → 100명 이내)하고, 비대면 회의방식(서면·화상회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며, 위원회 의사결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안건 의결 시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제외한 위원을 과반수로 명기)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 보호물·보호구역 지정·해제 등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문화재위원회를 둠(문화재보호법 제8조)

문제점

- 기피대상 위원 결정 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미흡
 - 개정안(제10조)에서는 ‘당사자의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로 기피 결정’을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위원회에서 기피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의결절차 없이 기피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어, 기피결정에 대한 위원회 의사결정의 합리성·민주성 미흡
 - * 위원회에서 기피신청의 이유,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결(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로서 기피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 필요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위원에 대한 기피여부 결정 시, 반드시 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개선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문화재위원회 규정

[시행 2021. 5. 1.] [대통령령 제31464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등의 조사·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사례 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안

평가대상 조문

제10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① 영 제11조의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는 각 검찰청의 장이 소속 직원 중 지명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 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은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2인을 포함하여 검찰청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⑥ 그 외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를 운영하는 각 검찰청의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 제정안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이하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심의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 등 관련 세부규정 신설

문제점

- 심의회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 부재
 - 제정안은 위촉된 심의회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 위원의 장기적인 연임이 가능하여 해당 위원이 심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고, 관련 부패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

- 심의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미흡

- 심의회는 범죄피해재산 환부 청구에 대해 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경우 그 청구에 대한 결정 및 환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① 회복대상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각 검찰청은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6조의 청구에 대하여 이를 담당하는 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 그 청구에 대한 결정 사항
2. 제10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사항
3. 기타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와 관련하여 검사의 요청이 있어 심의가 필요한 사항

- 그러나 제정안은 심의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해촉과 같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미흡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수 있어 심의의 공정성·객관성 침해가 우려됨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심의회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마련
- 심의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시행령 및 해당 법령 개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약칭 :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2호, 2020. 11. 24., 전부개정]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① 회복대상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검찰청에 범죄 피해재산환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검사가 제6조에 따른 환부청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와 관련하여 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심의회 위원장은 각 검찰청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⑤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각 검찰청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⑦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가 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4.] [법무부령 제987호, 2020. 11. 24., 제정]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해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각 검찰청의 장은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사례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0조의3(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으로 한다)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의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교통, 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근로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업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④ 사업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플랫폼택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3.6.)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하는 내용

문제점

- 위원회 위원의 모호하고 광범위한 자격 요건으로 인해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자의적인 위원회 구성 우려

- 위원회는 플랫폼운송사업허가에 관한 사항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심의 결과가 구속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어 전문성·공정성을 갖춘 위원 선발이 중요
- 시행령안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교통, 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규정
- 이로 인해 특정 분야에 편중된 위원 위촉 또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위원 위촉 등 자의적인 위원회 구성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참여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 임명·위촉권자의 사적인 이해 개입을 방지하고 위원 선정절차의 공정성 제고
 - ‘풍부한 학식과 경험’ 등 보유 여부 판단에 임명·위촉권자의 과도한 주관과 이해가 개입되지 않도록 대학·연구소·산업계 등 소속 구분과 관련 분야 필요 경력 년수 등 최소한의 객관적 자격 기준 명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약칭 :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시행 2021. 10. 8.] [대통령령 제31609호, 2021. 4. 6., 일부개정]

제20조의3(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2. 교통, 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1명 이상
3. 근로자 또는 소비자 권익 보장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명 이하

②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제1호의 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략)

사례 9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평가대상 조문

제6조(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이하 “선발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선발시험위원회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2.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도록 하는 시험
3. 선발시험 대상 개방형 직위 지정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 제출

②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은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이하의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을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선발시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은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 ⑦ (생략)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현 황

- 개정안은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에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 소속 공무원의 선발 시험위원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 임용예정 관련 분야, 채용·면접 등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나, 해당기관 소속 공무원(2명 이하)을 선발시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선발과정에서 수요부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여건 마련

문제점

- 이해관계를 가진 시험위원의 심의 배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 선발시험 응시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 제척사유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친족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시험위원의 회피를 의무화하지 않는 등 미흡하게 규정되어 실질적인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필요
 - * 개정안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을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회피 할 수 있도록 규정
 - * 인사혁신처는 「개방형공모직위지침(예규)」를 통해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기피·회피 대상으로 규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에 따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제척·기피·회피를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선발시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법령에 규정하고, 제척사유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이해충돌 방지가 가능하도록 규정
 - * 인사혁신처에서는 「개방형공모직위지침(예규)」개정을 통해 ①소속장관의 적격자 없음 결정 등으로 장기공석 발생 직위, 소속부처의 응시자 적격성 심사 필요성이 높은 직위 등의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서류전형에 1명의 해당기관 소속 공무원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위원의 제척 등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에 해당기관 소속 공무원이 시험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기관 소속 응시자에 대한 심의와 의결에서 배제되도록 개선할 예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약칭: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시행 2020. 9. 8.] [대통령령 제31009호, 2020. 9. 8., 일부개정]

제6조(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이하 “선발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선발시험위원회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2.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도록 하는 시험
 3. 선발시험 대상 개방형 직위 지정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 제출
- ②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선발시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 ⑤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는 위원에게 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 ⑥ 제5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⑦ 선발시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사례 1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5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은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의 차관급 공무원
2.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부위원장 또는 차장, 시·도지사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4. 기업의 해외진출과 국내복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둠(「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1. 지원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을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위원회의 공정한 정책판단을 도모하고자 함

문제점

-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 부재
 -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입지지원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 이러한 위원회의 기능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위원의 장기 연임에 따른 부패발생 위험 내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생략) /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 3.~5. (생략)

-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부재
 -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없어 심의 안전에 대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음
- 부적격한 위원의 심의 배제를 위한 해촉 규정 부재
 - 특정위원의 업무상 비밀누설, 비위행위 및 회피의무 위반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심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해촉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성·공정성 저해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를 시행령에 명시
-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촉위원의 연임 가능여부 및 횟수를 시행령에 명시

- 위원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 업무상 비밀누설 및 비위행위, 회피의무 위반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해당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마련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12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5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2.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부위원장·차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4. 기업의 해외진출과 국내복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심의안건 관련 전문가와 기업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사례 II

저작권법 시행령

II 평가대상 조문 II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제26조(등록신청) ① 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①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조정 하며,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 「저작권법」 개정(2020. 8. 5. 시행예정)으로 저작권 등록 업무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조문을 정비
 - 위 법률 개정에 따라 위원회는 저작권 관련 심의, 저작권 분쟁 알선·조정 등 업무 외에, 저작권 등록 업무의 직접적인 주체가 됨

문제점

- 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부재
 - 위원회는 저작권 관련 중요기능인 저작권 관련 심의, 저작권 분쟁 알선·조정을 수행하고 있어 심의의 공정성·객관성이 강하게 요구됨
 - 그러나 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 위원이 장기적으로 직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심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부패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위임 근거 규정 부재
 -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 및 의결 정족수 등이 시행령에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음
 - * 시행령 제5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5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참고

◆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같이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연임 제한 규정, 하위 법령 위임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제103조의3,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 따른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이 요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호원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④ (생략)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마련
- 하위 법령에 위원회 구성 등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규정 마련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저작권법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5. 그 밖에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례 1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속을 변경*하고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명토록 하는 등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 개정안은 위 법률 개정에 따라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 *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변경

문제점

- 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미흡
 -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의 회피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정의 실효성 저해가 우려되는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다소 미흡함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문화다양성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149호, 2020. 11. 10., 일부개정]

제4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개요

-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평가

평가방법

- 관련 부패사례 검토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타기관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과거 부패사례가 있었는지 검토
- 부패방지장치 관련 규정 및 실효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관련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 부패방지장치의 필요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부패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부 통제장치 도입 필요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

사례 1 경찰수사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15조(심사관) ① 경찰청장은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 확보를 위하여 각 경찰관서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심사관은 불송치 결정 사건을 비롯한 수사 전반의 점검, 각종 강제수사의 적법·타당성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평가기준

- 재량의 구체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현황

-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 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을 규정
- 적법절차 준수 및 강제수사의 내부 통제력 강화를 위해 경찰청장이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 확보를 위하여 각 경찰서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심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15조)

문제점

- 심사관 제도의 근거 규정 미흡
 -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 확보 및 강제수사의 내부 통제력 강화를 위해 심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심사관 업무가 불송치 결정 사건, 수사전반의 점검 및 각종 강제수사의 적법·타당성 심사 등 매우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제도를 둘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으로 정하여 부패 방지장치의 체계성 미흡
- 심사관 자격요건에 대한 기준 부재
 - 적법절차 준수 및 강제수사의 내부 통제력 강화 등 심사관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 할 때 심사관 선정에 있어 임명·위촉권자의 재량과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보다 객관화·구체화 할 필요
- 심사관 역할 및 담당업무 관련 규정 정비
 - 심사관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 할 때 심사관 역할과 담당업무가 매우 중요하므로 부령 자체에 구체적 규정 필요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심사관 제도의 필수적 근거 규정 명확화
- 심사관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 임명·위촉권자의 사적인 이해 개입을 방지하고 심사관 선정절차의 공정성 제고
 - '일정한 자격' 등 임명·위촉권자의 과도한 주관과 이해가 개입되지 않도록 업무와 관련된 수사경력, 또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 등 최소한의 객관적 자격기준 명시
- 심사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명확히 규정

[법령안 예시]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에 대한 [예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정, 변경 등 새로운 방향 제시 가능

제정안	개선 의견(예시)
<p>제15조(심사관) ① 경찰청장은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 확보를 위하여 각 경찰관서에 <u>일정한 자격을 갖춘 심사관을 둘 수 있다.</u></p> <p><신설></p> <p>② 심사관은 불송치 결정 사건을 비롯한 수사 전 반의 점검, 각종 강제수사의 적법·타당성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p> <p><신설></p> <p><신설></p>	<p>제15조(심사관) ① 경찰청장은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 확보를 위하여 각 경찰관서에 <u>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심사관을 임명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수사경력 0년 이상의 수사경과자(경감이상)</u> 2. <u>변호사자격자(경찰경력0년)</u> 3. _____ 4. _____ <p>② 심사관은 소속 경찰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u>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불기소 의견 송치 사건의 적법 타당성 심사</u> 2. _____ 3. _____ 4. _____ <p>③ <u>그 밖에 심사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u></p>

[유사 입법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③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21조(수사처수사관의 직무) ①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② 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제37조(보안심사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보안심사관으로 임명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2.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선박보안심사·임시선박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
3.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교부 등
4. 제16조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재교부
5. 제19조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항만시설보안심사관으로 임명하여 항만시설보안심사·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제45조(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등) 법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제45조 관련)

1. 선박보안심사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가. 선박보안심사(최초보안심사·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에 1회 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것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해양수산계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또는 전문대학(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말한다)에서 선박의 항해, 기관 또는 운항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국제항해선박에서 2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선박의 안전 또는 보안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1)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에서 승선한 경력과 2)에 따라 선박의 안전 또는 보안 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법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다음의 교육을 모두 받았을 것
- 1)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칙」(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ISPS Code)의 내용 : 7시간
 - 2) 선박보안계획서의 작성·이행과 승인요령 : 7시간
 - 3) 선박보안평가와 선박보안심사 요령 : 7시간
 - 4) 선박 및 항만 보안시설·설비의 운용·관리 : 4시간
 - 5) 선박보안 일반 : 3시간

2. (생략)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0. 17.] [법무부령 제959호, 2019. 10. 17., 일부개정]

제7조의3(조사관) ① 법무부장관은 판결 전 조사 등 조사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관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7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의 판결 전조사 등 조사 분야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필기시험 및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를 통과하였을 것

③ 필기시험 및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 등 조사관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록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3. 관련 법령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준수 (수요 측면)

1] 준수부담의 합리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input type="checkbox"/>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input type="checkbox"/>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input type="checkbox"/>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2 제재규정의 적정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유사 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input type="checkbox"/>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input type="checkbox"/>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input type="checkbox"/>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3 특혜발생 가능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혜택이나 이익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가?	
<input type="checkbox"/>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집행 (공급 측면)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 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 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의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대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한가?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이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법정 위탁·대행의 경우가 아닌 지정 등을 통해 수탁·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 기간 및 연장 가능 횟수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자료제출·보고 의무 및 감독기관의 정기점검 등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대행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대행 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취소와 정지 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input type="checkbox"/>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	

3 재정누수 가능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input type="checkbox"/>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input type="checkbox"/>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input type="checkbox"/>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 기간 지원제한 조치)?	
<input type="checkbox"/>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금의 ○배 추가 환수 등)?	

행정절차 (절차 측면)

① 접근의 용이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별도의 참여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가?	
<input type="checkbox"/>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행정의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별도의 참여장치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② 공개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3] 예측 가능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 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부패통제

①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나 영리 행위금지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②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input type="checkbox"/>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input type="checkbox"/> 부패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장치 도입이 필요한가?	

③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공무원의 부작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령상 근거 부재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공무원의 직무태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합리한 법령상 근거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느장 대응하는 행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과 소속 기관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공무원의 행위 등에 있어서 소극적인 해석을 유도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을 저해하는 규정이 있는가?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1 인·허가, 승인·지정 등 업무¹⁾

검토항목(적용기준)		평가결과
기준 · 절차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처리절차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등에 대한 처리권자의 재량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처리 기간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은 합리적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 장기의 처리기간으로 인한 급행료지급, 음성적 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검토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예측 가능성)	
신청 서류 등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 준비사항, 대기시간 등 민원인의 준수부담은 사회통념이나 유사업무와 비교할 때 합리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서류, 준비사항,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수준인가?(예측 가능성)	
이의 제기	<input type="checkbox"/> 위법·부당한 인·허가 및 그 거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공개성) - 인·허가 처리기준,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관리 · 감독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이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후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는가?(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이후 각종 지시, 시정명령, 보고 등 사후 관리·감독의 요건·기준 및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1)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의 업무를 포함

검토항목(적용기준)		평가결과
제재	<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취소, 정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유사업무에 규정된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위반행위별 또는 행정제재 유형별로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인·허가 의제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을 규정함에 있어 관계기관 협의·이해관계인 의견 청취·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는 등 인·허가 의제 효과의 인정과정에서 특혜 우려가 있는가? (특혜발생 가능성)	

② 부과·징수 업무2)

검도항목(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input type="checkbox"/> 부과·징수의 법적근거,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부과·징수 금액의 산출기준, 산출방식 및 산출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행정처분 부과(예.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의 경우 제재 수준이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적정한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부과·징수 절차상에 인정되는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사유, 기간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가?(예측 가능성)	
가중 · 감면	<input type="checkbox"/> 행정처분 등의 가중·감면 시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이고 처분기준 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공무원이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특혜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특혜발생가능성) - 가중·감면의 적용방식(비율산정, 적용순서 등), 시행시기, 소급적용 여부가 적정한지 검토	
이의 제기	<input type="checkbox"/> 부과·징수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준수사항 등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은 까다롭지 않고 용이한가?(준수부담의 합리성)	
환급	<input type="checkbox"/> 과오납 및 환급금 지급·신청과 그에 대한 지급대상(과오납금의 양도)·처리 기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과다징수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 및 산정 기산일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 가능성)	
체납 처분	<input type="checkbox"/> 압류, 공매, 환가처분 등 체납처분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대상선정, 조사방식, 절차 등의 규정이 구체적인지 검토	

2) 인·허가 등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등 각종 행정처분 관련 업무

*과태료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부과·징수 절차 및 불복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에서는 부과요건과 부과권자 등에 관한 규정만 두면 됨

3] 보조·지원 업무3)

검토항목(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기준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 명목으로 보조·지원 대상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부관을 부과할 여지는 없는가?(준수부담의 합리성)	
대상 선정	<input type="checkbox"/>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지원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재정누수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이 필요한가?(재정누수 가능성)	
이의 제기	<input type="checkbox"/> 위법·부당한 보조·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을 공개하는 규정이 있는가?(공개성)	
관리·감독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 경비가 행정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적절한 관리·감독·정산·성과평가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제재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 경비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재정누수 가능성) - 처벌규정(벌칙규정),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지원금 환수, 손해자격 배제	

※ 재정지원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근거법을 또한 상이하므로 재정지원 양태에 따라 일반법 등 관계법령⁴⁾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중복규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3) 보조·출자·출연·융자,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 국유재산법상의 특례 등 각종 재정지원 업무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4 위탁·대행 업무

검토항목(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 기준·요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 대상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input type="checkbox"/>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위탁·대행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위탁	<input type="checkbox"/>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 지원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업자에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재정누수 가능성)	
이의 제기	<input type="checkbox"/> 위법·부당한 위탁·대행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공개성) - 위탁·대행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관리 · 감독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자료제출·보고 의무, 조사·감독 권한, 시정명령권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 업무와 관련한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 시 감독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검토항목(적용기준)		평가결과
제재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 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제재수단이 구비되어 있는가? (제재 규정의 적정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공무원 의제 등 처벌규정(벌칙규정), 지정취소·업무정지·지원금 회수 등 행정처분, 계약해지	
기타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업자에게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이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input type="checkbox"/>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5 행정조사 업무5)

검토항목(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input type="checkbox"/> 조사권 행사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⁶⁾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 존재여부	
	<input type="checkbox"/> 조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기간연장시 사유설명 의무 등의 규정 확인	
	<input type="checkbox"/>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이의 제기	<input type="checkbox"/>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input type="checkbox"/>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공개성) - 조사대상·내용·기간 및 결과,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무단·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실시 전 사전통보 규정을 두고 있는가? ⁷⁾ (공개성) - 사전통보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예외사유가 타당한가	
제재	<input type="checkbox"/>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절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5)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으나, 단순 실태조사 등 명령이나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행정조사 외에도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명령·강제를 수단으로 하는 권력적 행정조사도 있음

6) 「행정조사기본법」에서 행정조사의 대상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검토항목(적용기준)		평가결과
기타	<input type="checkbox"/>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 대한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input type="checkbox"/>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조사정보 사전유출, 대상자 선정 제외, 조사결과 은폐·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조사,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6 단속·점검 업무8)

검토항목(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시행요건, 시행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검토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의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 가능성) - 무단·임의방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 대상범위, 기간, 연장사유 등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의무 확인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의 실시대상 업체에게 부과된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이의 제기	<input type="checkbox"/> 위법·부당한 단속·점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성의 용이성)	

되어 있고 세무조사나 금융감독기관의 검사·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은 이 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제3조제2항)

7)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음

8)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은 이유로 부담적 행정행위를 발하는 경우나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지도의 경우는 본 체크리스트 활용

검토항목(적용기준)		평가결과
정보 공개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공개성) - 대상자, 시행기간, 시행결과(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제재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절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기타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누락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게 통보 및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input type="checkbox"/>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단속정보 사전유출, 위법행위 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단속,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 기능 등	

<참고 : 단속·점검분야 예시>

풍속영업분야	식품·위생분야	환경분야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무도장 및 무도학원 등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식품가공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등	대기·악취배출업소, 폐수배출·처리업소, 오수·분뇨처리업소, 폐기물배출·처리업소, 소음·진동배출업소, 유독물영업소 등

7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검토항목(적용기준)		평가결과
구성	<input type="checkbox"/>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input type="checkbox"/>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위원위촉 및 활동 과정에 관련협회,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으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가?(특혜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위원 구성시 내부·외부 위원들의 구성비율은 적정한가?(이해충돌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는가?(이해충돌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기관장의 위원장 겸임 또는 위원 단독위촉 권한은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인가?(이해충돌 가능성)	
임기 및 신분	<input type="checkbox"/> 위원의 임기 및 연임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이해충돌 가능성) -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임기, 기간의 적정성, 연임규정 유무 확인	
	<input type="checkbox"/>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이해충돌 가능성) -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검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제척·기피·회피	<input type="checkbox"/>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이해충돌 가능성)	
제재	<input type="checkbox"/>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규정을 두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 가능성)	
이의 제기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input type="checkbox"/>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공개성)	
	<input type="checkbox"/> 위원 위촉과정 및 위원회 활동정보를 구체적·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공개성)	

8 인사 업무

검토항목(적용기준)		평가결과
인사 기준	<input type="checkbox"/>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인사 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 구성시(이해충돌 가능성) -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특별 임용	<input type="checkbox"/> 특별임용 조항이 있는 경우(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특별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특별임용 대상자 선정 및 평가 방법 등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 (공개성) - 특별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있는가?(공개성)	
기관장 재량	<input type="checkbox"/> 임용·승진·평가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가점부여(인정)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 등	
이의 제기	<input type="checkbox"/>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접근의 용이성)	

검토항목(적용기준)		평가결과
정보 공개	<input type="checkbox"/>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공개성)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정한 기간 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 모집대상직위, 예상결원, 대상인원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	<input type="checkbox"/> 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 당사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줄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재 규정 확인	
기타	<input type="checkbox"/>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 장치는 있는가?(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3. 관련 법령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법 률	시 행 령
<p>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의 내부규정 <p>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패유발의 가능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 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p>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p>

법 률	시 행 령
	<p>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 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법령등의 소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 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p> <p>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 까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p> <p>⑥ 위원회는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해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할 수 있다.</p> <p>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p>

법 률	시 행 령
	<p>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p> <p>②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p>

2) 제·개정 시 참고할 만한 일반법

① 과태료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과태료 부과 시 고려사항,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부과·징수 방법, 감경기준, 이의제기 절차 등 규정

② 위원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설치 요건 및 절차, 구성 및 운영 방법, 위원회 설치 시 법령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및 공무원 의제 등 규정

③ 행정업무의 위임·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 기준, 민간위탁 기준 및 대상선정 기준, 지휘·감독 등 규정

※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위임·위탁은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규정

④ 개인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기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제한,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 등 규정

⑤ 행정정보의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행정정보의 공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규정

⑥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 등 : 「행정절차법」

▷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청문·공청회, 행정예고·행정지도 등 규정